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.

도시교통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1일 김영실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도로점용공사장의 보행안전통로 및 야간 안전시설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강화하는 한편,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절차와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함

3. 주요내용

가. 불필요한 적용대상 규정 삭제(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)

나. 보행안전통로 확보, 야간 안전시설 설치·유지관리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에 관한 사항 구체화(안 제4조제2항제7호)

다.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·조정 절차 명확화(안 제8조)

라.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따른 안전시설 점검 및 공사시행자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 근거 마련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마. 시행규칙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

다. 관련부서 : 도 로 관 리 과

라. 입법예고 : 2026. 10. 21. ~ 2026. 10. 26.(6일간)

마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, 공사장 주변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❍ 주요 개정사항은 교통소통대책에 보행안전통로와 야간 안전시설의 설치·유지관리와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, 교통소통대책 변경 시 야간시설 등의 점검과 안전시설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
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은 물론 시민의 통행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붙임1 관계 법령

❑ 「도로법 시행령」

제62조(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)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(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. 이하 제63조에서 같다)에 도로관리심의회(이하 "관리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조정
2.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
3.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·관리
4.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
5.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

제66조(소심의회)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·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·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(이하 "소심의회"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,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붙임2 **예산 조치**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

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.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 첨부 사유

본 조례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.

- 본 조례는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통행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시 점용 공사장 보행안전 유지 관리 보완 및 상태 점검, 도로관리심의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예방사업의 종류, 방법, 규모, 사업범위 등을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도로관리과장 윤정원